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❍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토록 이장임무를 추가하여 마을리더로서 책임감을 키우는 한편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이장의 임무(안 제2조)

· 이장의 임무 중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토록 하여 마을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

나. 사기진작(안 제5조)

·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앞장서는 이장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·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쉽게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3) 입법예고(2013. 4. 4 ~ 4. 23) : 별도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토록 이장의 임무를 추가하여 마을리더로서 책임감을 키우는 한편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장의 (안2 조)이장의 임무 중 각종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하여 마을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(안 제5조)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앞장서는 이장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동 개정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❍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는 중복수혜자에 대한 제한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개선(안 제4조제3항)

·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의 타 기관·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중복 수혜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개선

나. 장학금액 개선(안 제6조)

·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3) 입법예고(2013. 4. 4 ~ 4. 23) : 별도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는 중복수혜자에 대한 제한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받을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의 타 기관·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중복수혜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

❍ 동 조례 개정으로 이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 규정에 합당함으로 동 개정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❍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및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군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)

나.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 내지 제12조)

다. 군민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
라.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·기관·단체의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7조 내지 제18조)

마.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와 지원 경비 관리 사항을 규정(안 제20조 내지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라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마. 기　　타

1) 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입법예고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,

❍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구설치·운영 및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성주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22개 조문으로 구성되 었으며,

❍ 제1장 총칙에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,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수를 의장으로 한 12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담당자를 서기로, 평생교육업무 담당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❍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관을 설치·운영하며,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시설과 강좌 이용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 제4장 보칙에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❍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생교육 진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, 수년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정부시책과도 부합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